

주주여러분께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2년 3월 19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6-7 본사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5기(2011. 1. 1 ~ 2011. 12. 31)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20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을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2012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6 - 7

신라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준형



[안 건 참 고 자 료]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 : 사내이사 2인

이사 후보자 명단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 계
		추 천 인			
사 내 이 사	정 필 영	1942.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AMP 수료 ○ 前) (주)원일특강 부회장 	없 음	없 음
		이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신라교역(주) 사장 		
사 내 이 사	박 병 언	1942.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 現)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없 음	없 음
		이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신라교역(주) 이사 		

관 변 경 (案)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7조(주식의 종류) <u>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u> <u>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u> <u>우선주식으로 한다.</u></p>	<p>제7조(주식의 종류) <u>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u> <u>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u> <u>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u> <u>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u> <u>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u> <u>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u></p>	<p>의거 종류주식을 수 있는 근거마련</p>
<p>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u>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u> <u>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u> <u>발행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한다.</u> <u>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u> <u>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에서 발행시</u> <u>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u> <u>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u> <u>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u> <u>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u> <u>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u> <u>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u> <u>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u> <u>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u> <u>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u> <u>배당한다.</u> <u>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u> <u>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u> <u>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u> <u>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한다는</u> <u>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u> <u>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u> <u>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u> <u>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u> <u>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u> <u>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u></p>	<p>제7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u>①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u> <u>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u> <u>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한다.</u> <u>②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u> <u>기준으로 년 5%이상에서 발행시에</u> <u>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u> <u>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u> <u>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u> <u>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u> <u>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u> <u>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u> <u>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u> <u>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u> <u>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u> <u>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u> <u>배당한다.</u> <u>⑤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u>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u> <u>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u> <u>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u> <u>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u> <u>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u> <u>⑥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u> <u>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u> <u>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u> <u>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u> <u>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u> <u>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u></p>	<p>개정상법 내용 반영</p>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p> <p>⑧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p> <p>⑨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9조(신주인수권) ① ~ ② (생략) ③ (신설)</p> <p>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p> <p>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p>	<p>제9조(신주인수권) ① ~ ② (좌동) ③제2항에 따라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좌동)</p> <p>⑤ (좌동)</p>	<p>개정상법 내용 반영</p>
<p>(신설)</p>	<p>제13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개정상법 내용 반영</p>
<p>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p>	<p>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② (좌동)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제7조의2의</p>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u>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 ⑤ (생략)</p>	<p><u>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 ⑤ (좌동)</p>	<p>용어 정리</p>
<p>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u>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 ⑤ (생략)</p>	<p>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② (좌동)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u>100억원은 제7조의2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 ⑤ (좌동)</p>	<p>용어 정리</p>
<p>제33조의2(집행임원) ①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u>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u> ②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u>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u> ③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3조의2 (삭제)</p>	<p>의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으로 혼란이 예상되어 삭제함</p>
<p>(신설)</p>	<p>제33조의4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개정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감감 근거규정을 신설</p>

현행	변경(안)	비고
<p>제34조(감사의 직무) ① ~ ②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 할 수 있다. <u>(신설)</u></p>	<p>제34조(감사의 직무 등) ① ~ ② (좌동) <u>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 <u>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u> ⑤ (좌동) ⑥ (좌동) <u>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u></p>	<p>개정상법 내용반영</p>
<p>제37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u>(단서 신설)</u></p> <p>② ~ ③ (생략)</p>	<p>제37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u>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u> ② ~ ③ (좌동)</p>	<p>개정상법 내용반영</p>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u>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u> <u>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대차대조표</u> 2. <u>손익계산서</u> 3. <u>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u></p> <p><u>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u> <u>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u>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u> <u>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대차대조표</u> 2. <u>손익계산서</u> 3. <u>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u></p> <p><u>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u> <u>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u></p> <p>1. <u>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u> 2. <u>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u></p> <p><u>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u> <u>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재무제표의 승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규정 반영</p>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43조의2(주식의 소각) <u>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u></p>	<p>제43조의2(삭 제)</p>	<p>내용 반영</p>
<p>제44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u>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u> ②이익의 배당을 <u>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u> ③제1항의 배당은 <u>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u></p>	<p>제44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u>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u> (삭 제) ② (좌 동)</p>	<p>개정상법 내용 반영 종류주식에 관련된 사항으로 동 조문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정관은 <u>제4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3항, 제14조 제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37조, 제42조, 제43조의2, 제44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u></p>	<p>시행 시기가 2012년 4월 15일부터이므로 관련부분은 경과규정을 둠</p>